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년 12월 7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0년 12월 7일

라. 상정일자 : 2000년 12월 22일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에 따른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철거민에게 주거용 재산 매각시(400㎡이하) - 매각대금 분할 납부(10년 이내 8% ⇒ 10년 이내 5%)
- 농지대부료 부과시 농지 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에서
⇒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부료 경감
⇒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 유찰시 산출한 대부료, 사용료의 20% 범위내 가감조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상 필요하여”로 확대
-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재산 매각시 매각 가격을 감면하는 경우를 10억 달러 이상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라.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경 도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정비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철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준칙에 의한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 타 조례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